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 4 차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동차매매업자의 공제 가입 시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면제 〉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47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제2217247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자동차매매업자의 공제 가입 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면제(안 제7조제4항 신설 등)	3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47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준호의원 등 24인

2. 제 안 일 : 2026. 3. 05.

3. 회 부 일 : 2026. 3. 0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이라 함)한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해 보증하여야 하며, 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함)에 가입하여야 함.

그러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는 유지되어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부여하고 있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보증 체계를 다각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58조의3제4항 등).

Ⅲ. 검토의견

1. 자동차매매업자의 공제 가입 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 보험 가입 의무 면제(안 제58조의4제2항 단서 신설 등)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 ③ (생략)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4조제4항제23호에서 같다)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제58조의4제2항 본문 에----- --책임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의 공제의 가입에-- ----- ----- -----.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생략) 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제1항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현행	개정안
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생략)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 ④ (생략)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한 경우 ⑥ (생략) 법률 제2118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 ----- . 다만, 자동차매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책임의 범위보다 넓은 제68조의14에 따른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58조의4제2항 본문을----- -----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18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벌칙) ----- -----

현행	개정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 25의6. (생략)	1. ~ 25의6. (현행과 같음)
25의7.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 <u>상태점검자</u>	25의7. 제58조의4제2항 본문을----- ----- ----- --- <u>상태점검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u>
26. ~ 28. (생략)	26. ~ 28.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¹⁾은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매매계약

1)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체결 전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이하 “점검자”라 함)가 점검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점검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그 보증에 책임을 지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함)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²⁾, 해당 책임보험은 자동차 종합상태,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및 자동차 세부상태에 관한 사항을 보장범위에 포함하여야 함^{3).4)}

그런데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유지됨으로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 보험 등)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이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포함되는 사항 중 자동차 종합상태,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및 자동차 세부상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보장범위에 포함되도록 할 것

2. 고의에 의한 사고 및 주행거리·연식 기준 등 보상제외 대상, 자기부담금에 관한 사항 및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것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및 관련 자료

2. 보험요율 산출기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고 발생이력 및 관련 자료

4)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보증은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주행거리 2,000km 이내의 의무보장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증범위에 따라 이루어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제2항)

써 이중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이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⁵⁾.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고, 이 사유로 책임보험 미가입시에는 점검자의 행정처분과 벌칙을 면제하려는 것임.

현재 점검자가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점검자에서 자동차매매업자로, 자동차매매업자에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2020년 309억원에서 2024년 864억원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규모 및 현황 >

(단위 : 천건, 천원)

기 간	계약건수	납입보험료	사고건수	지급보험금	사고율 (%)	손해율 (%)
2019.6 ~2020.2	472	18,989,991	7	5,211,085	1.48%	27.44%
2020.3 ~2021.2	840	30,936,439	23	22,337,522	2.74%	72.20%
2021.3 ~2022.2	972	40,431,992	34	39,272,252	3.50%	97.13%
2022.3 ~2023.2	936	53,093,794	36	42,060,044	3.85%	79.22%
2023.3 ~2024.2	976	71,423,663	49	53,110,048	5.02%	74.36%
2024.3 ~2025.2	980	86,420,264	42	47,487,997	4.31%	54.95%
합계	5,176	301,296,143	191	209,478,948	3.69%	69.53%

자료: 국토교통부(보험개발원)

* 계약건수는 보험가입된 중고차 대수, 사고건수는 보험금 지급된 중고차 대수

5) 소비자가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중고자동차 구입 금액과는 별도로 책임보험료를 지불함.

또한, 최근에는 책임보험과 비교하여 보장범위와 기간이 확대된 확장보험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확장보험 가입시에도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중복 가입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반면, 개정안은 책임보험 가입 면제 요건으로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고, 민간 보험사의 확장보험 상품은 제외되어 있어, 최근 민간 보험사의 확장보험 상품이 활성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조합의 공제만을 면제로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될 경우 책임의식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의·중과실로 인한 부실 점검의 경우 점검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 중복 보험 가입 해소를 통한 비용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민간 보험사 확장보험 상품의 면제 대상 포함 여부 및 점검자의 책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나.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국토교통부)

소비자 선택에 따라 성능보험 보장범위를 포괄하는 확장보험에 가입 시 소비자를 수익자로 하는 성능보험은 가입 면제 필요함.

다만, 매매업자와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제 뿐만 아니라 민간 보험사의 상품까지 선택을 허용할 필요 있음.

또한, 책임보험 면제로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점검자의 고의·중과실로 점검오류가 발생하여 의무보장기간(30일/2천 km) 내 보험 접수된 경우 구상 청구 허용 필요함.

(관련 단체) : 참고1 참조

- 전국매매사업조합연합회 : 조건부 동의
- 한국매매사업조합연합회 : 적극 동의
- 한국진단보증협회(성능점검단체) : 수용 곤란
-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성능점검단체) : 수용 곤란
-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성능점검단체) : 수용 곤란
- 한국자동차공정정보협회(성능점검단체) : 수용 곤란
- 한국검사정비연합회(성능점검단체) : 동의

○ 한화손해보험 : 수용 곤란

○ KB손해보험 : 수용 곤란

문 의 처
02)6788-5575

참고1

관계기관 의견

제출기관	의 건
전국매매 사업조합 연합회	<수정 필요(조건부 동의)> ○ (규율 대상 관련)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보증 및 책임은 점검자가 자신이 점검한 내용에 대해 책임지는 보험인데, 취지에 맞지 않게 제3자인 매매업자가 가입하게 되면,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이 없어 부실점검이 발생할 수 있음 -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한 오류 등으로 사고 발생시에도 점검자가 아닌 매매업자가 보증주체가 되므로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발생 우려가 있음 ○ (범위 관련) 아울러, 공제조합의 공제뿐 아니라 민간 보험사가 운용하는 별도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가입 의무를 면제해야 공제조합의 독점을 방지, 형평성에 맞을 것으로 사료됨 - 민간보험사가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철회되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함
한국매매 사업조합 연합회	<적극 동의> ○ 현 책임보험의 문제점 - (이권 사업화) 소비자는 보험사 선택권 없이 보험료만 부담하고, 가입의무자인 성능·상태점검자는 보험료의 일부를 편취하고 있음 - (과다한 보험료) 보험료 상승이 보험사와 점검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손해율이 증가하며, 높은 보험료로 중고차 판매 걸림돌 - (최소 보증범위) 30일의 짧은 보증기간, 제한된 보증범위 ○ 개정안은 책임보험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속한 의결 필요
한국진단 보증협회 * 성능점검단체	<수용 곤란> ○ (제도 취지 배치) 성능·상태점검제도는 제3의 전문점검단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였음 * 매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할 상품에 대해 점검하였을 때, 양호만 남발하여 소비자 불신 증가되어 '05년에 점검자에서 매매사업조합은 배제 - 개정안과 같이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은 행사하나, 책임(보험가입을 통한 배상)은

제출기관	의 건
	타인(매매업자)이 지는 경우, 점검자는 책임을 질 일이 없어 성실한 점검에 한계 발생하게 됨 - 보험가입자인 매매업자의 요청에 따른 부정한 결과가 양산되면, 결국 <u>성능·상태 점검 제도의 형해화 우려</u> ○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매매 관련 보험(공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험료는 사실상 매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음 - 개정안 시행시, <u>성능상태점검과 책임이 분리되어 부실점검, 보험료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u> - 매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보험료 납부사실을 모르는 것보다 현행 방식과 같이 소비자가 보험료 부담을 명확히 인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능점검을 요청하거나 기대하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제도 취지에도 부합 ○ 위와 같이 법체계적 혼선, 점검자의 독립성 약화, 소비자의 부담만 증가하여 <u>성능·상태점검 제도 도입 취지가 몰각, 현행 체계 유지 필요</u>
한국자동차 기술인협회 * 성능점검단체	<수용 곤란>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오류에 대하여 소비자의 보증받을 권리 침해,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 '05년 이전으로 회귀하는 퇴행 결과 초래 우려 ○ 현행 법률은 성능·상태점검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성능·상태점검 수행시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매매사업자의 공제가입을 이유로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규정의 실효성이 없으며, 성능·상태점검의 보증책임 약화될 수 있음 ○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점검자가 수행한 점검오류에 대한 보증책임을 위하여 점검자가 가입하는 전문가배상보험이나 매매공제조합의 공제는 매매사업자가 판매한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로서 근본 취지가 다르므로,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공제보증으로 대체할 경우 성능상태점검 행위자와 보증책임자가 불일치
전국자동차 성능평가 협회 * 성능점검단체	<수용 곤란> ○ (책임과 담보간 불일치) 성능·상태점검자는 여전히 법적 보증책임을 부담함에도 책임보험이 면제될 경우, 해당 책임의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약화되며, 손해 발생시 피해구제의 실효성 저하 우려 ○ (소비자 보호 수준 저하 우려) 공제는 보험과 달리 보장범위 및 지급기준 등이 개별 조합의 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어 보상의 안전성 등 소비자 보호 수준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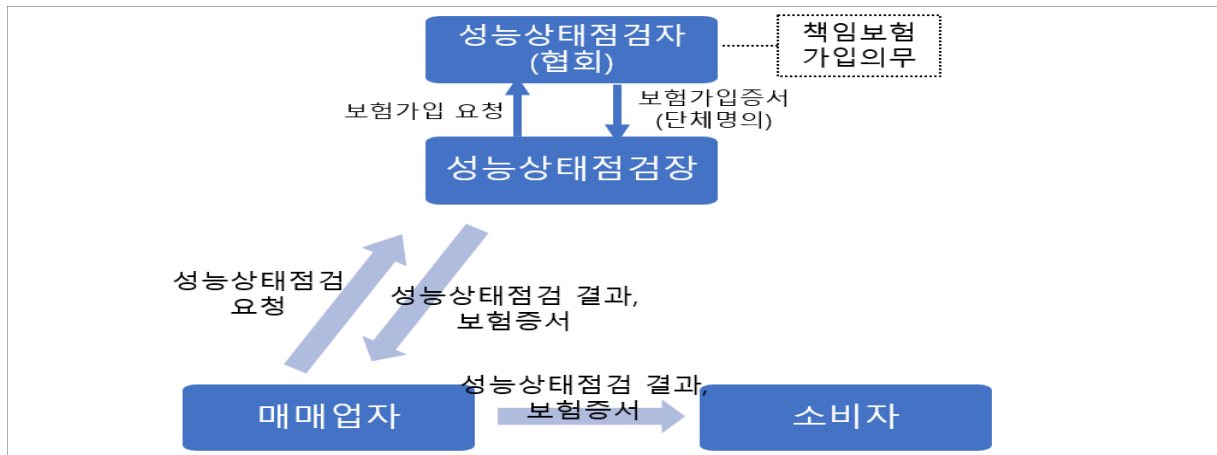
제출기관	의 건
	우려 ○ (성능·상태점검 제도의 신뢰성 저하) 매매업자의 공제가입을 전제로 점검자의 책임보험 면제 시, <u>점검자의 지위가 매매업자에 종속되어 점검결과의 공정성 및 제도 신뢰성 저하 가능</u> ○ (책임구조의 불명확성 및 분쟁 증가 우려) <u>공제조합과 점검자간 책임범위 불명확, 사고 발생시 책임 귀속 분쟁 우려</u>
한국자동차 공정정보 협회 * 성능점검단체	<수용 곤란> ○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보험 제도 악화·형해화 내용) 성능상태점검 및 책임보험은 점검의 독립성·객관성 확보 및 품질향상, 점검자에 대한 직접적 책임부과, 소비자 권리구제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매매업자와 분리된 별개의 책임 제도 - 개정안은 점검자의 책임을 매매업자 공제로 사실상 흡수·대체하는 것으로 법 제58조의4 기본 구조를 흔들고, 매매업자에게까지 책임구조를 집중하여 점검의 독립성과 객관성 훼손 우려 ○ 공제조합의 자동차연장보증공제(EW)는 성능점검 책임보험 보증기간 후 보완하는 연장보증상품으로 구조·기간·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중복되는 보험으로 보아 점검자의 책임보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현재는 책임보험의 의무 최소 보장을 받고, 추가 보장을 원하는 경우에만 공제조합 등의 연장보증공제를 가입하는 구조이나, 개정안 시행 시 의무 최소 보장 및 선택적 추가 보장이 통합되어 사실상 고가 상품이 표준화될 가능성이 있음
한국검사정 비연합회 * 성능점검단체	< 동의 > ○ 본 개정안은 일괄적인 책임보험 가입 강제에서 벗어나 공제조합에 가입된 매매업자에게 법적 기준보다 넓은 보증서비스 제공과 책임보험 가입선택권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 소비자 편의 및 선택권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책임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 예상되며, 기존 규제를 합리화하여 시장 왜곡 해소, 성능점검·매매업 간 자율 관리체계 확립 등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및 중고차시장 성장 견인 기대할 것으로 판단됨
한화손해 보험	<수용 곤란> ○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점검자가 전문인으로서 수행한 점검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할 경우, 그 과실에 대해 배상하는 <u>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성격의 의무보험</u>이며, 점검행위자와 보험(전문인 책임담보)이 일치한 구조

제출기관	의 건
	- 개정안대로 점검은 점검업체에서 하고, 책임보험은 공제조합이 가입하는 이중적 구조가 형성되므로 점검자가 부담할 전문인 책임이 희석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매매업자와 실제 위험을 발생시키는 점검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분리되어 도덕적 해이 위험이 커질 수 있음 - 도덕적 해이 누적 시 <u>성능점검의 신뢰성·정확성 약화되어 장기적으로 손해를 상승 우려되며, 공제조합 공제도 재보험 등으로 궁극적 리스크는 손보사에 전가될 수 있음</u> ○ (소비자 선택권 축소, 비용 부담 증가 우려) <u>현행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의무보험인 성능점검 책임보험을 통해 저비용으로 보호를 받고 필요시에만 연장보증 등 추가상품을 선택적으로 이용가능하나, 개정안 시행시 공제조합이 성능점검 보험 구간까지 포함하는 통합상품을 설계하게 되면, 소비자는 고가 상품의 비용을 부담하게 됨</u>
KB손해보험	<수용 곤란> ○ 현 법 취지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고, 점검 오류 등 사고 등 발생시 각자 보험에서 처리하고 있음 - 개정안과 같이 매매업자가 기존의 성능·상태점검 범위에 해당하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성능점검자는 실질적으로 점검을 성실하게 할 요인이 없으며, 이 경우 <u>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간 상호 견제 취지가 적용되지 않고 매수인 피해 확대 우려</u> - <u>성능점검자와 유착해소,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매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u>

참고2

자동차 매매 및 성능·상태점검 업계 현황

중고차 거래 시 성능·상태점검 및 책임보험 가입 절차



- **(매매업)** 전체 매매업체 **6,338개**(‘25.12월 기준)에서 약 **3.5만명** 종사 중, 중고차는 연 256만대[매매업자 129만, 당사자(개인간) 127만] 거래

<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현황 >

구 분	설립일	회장	조합수	업체수	종사원수
전국연합회	'72.3.31	박동근	9개(32%)	2,339개(41%)	약 1.1만명
한국연합회	'06.7.25	엄태권	19개(68%)	3,402개(59%)	약 2.3만명

- **(성능·상태점검)** 전체 성능점검장 568개(정비업자 367, 성능점검단체 201)에서 연간 약 130만대의 성능점검 수행 중(협회는 88만대, 약 67% 점검)

- 종사자 수는 1,182명(개소당 약 2명), 매출액은 약 520억원으로 추정(평균 성능점검 가격 4만원)

< 성능점검자 현황(‘25.12, 단위 : 개, 명) >

단체명	성능점검 단체(국토부 허가)				정비업자 (정비연합회)	합계
	한국자동차 진단보증협회 (‘03)	한국자동차 기술인협회 (‘06)	전국자동차 성능평가협회 (‘19)	한국자동차 공정정보협회 (‘23)		
대표	정 욱	윤병우	배병규	박배수	곽영철/양승용	-
점검장	98	18	63	22	367	568
종사자	191	24	73	32	862	1,182

참고3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도 및 책임보험 현황

- (성능·상태점검 제도) 소비자에게 중고차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매매업자의 구조·장치 등 성능 고지 의무 도입('87.7)
 - 정비업체 또는 매매조합이 차량의 구조·장치 등 성능을 점검하고, 성능점검기록부 발급('87.8)
 - 交通安全공단에도 성능·상태점검 권한 부여('01.4)
 - 매매조합을 성능·상태점검자에서 제외하고, 국토부의 허가를 받은 성능점검단체*(비영리법인)를 성능·상태점검자의 범위에 추가('05.2)
 - *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등 현재 4개 단체
 - 交通安全공단이 성능·상태점검자에서 제외('13.9)
- (책임보험 연혁 및 현황) 성능·상태 상이 등 점검 오류로 인한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

- ('17.10.)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법 개정,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 ('19.6.) 손해보험사(총 12개사) 보험상품 출시로 제도 본격 시행
- ('19.8.) 업계간 이견, 소비자 선택권 등을 감안하여, 책임보험을 임의보험으로 개정하는 법안 발의(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 ('20.5.) 3차례 국토위 소위 논의되었고, 법사위에서 이견으로 법안 계류·폐기

<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규모 및 현황 >

(단위 : 천건, 천원)

기 간	계약건수	납입보험료	사고건수	지급보험금	사고율(%)	손해율(%)
2019.6 ~2020.2	472	18,989,991	7	5,211,085	1.48%	27.44%
2020.3 ~2021.2	840	30,936,439	23	22,337,522	2.74%	72.20%
2021.3 ~2022.2	972	40,431,992	34	39,272,252	3.50%	97.13%
2022.3 ~2023.2	936	53,093,794	36	42,060,044	3.85%	79.22%
2023.3 ~2024.2	976	71,423,663	49	53,110,048	5.02%	74.36%
2024.3 ~2025.2	980	86,420,264	42	47,487,997	4.31%	54.95%
합계	5,176	301,296,143	191	209,478,948	3.69%	69.53%

* 출처 : 보험개발원 / 보험개발원의 손해율 산출 기준일은 매년 2월 28일

** 계약건수는 보험가입된 중고차 대수, 사고건수는 보험금 지급된 중고차 대수